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51
------------	------

2023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3일
- 다. 상정일자: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 관련계획 및 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현황, 현황분석

나. 기본구상

- 목표 및 지표, 기본방향, 보전체계, 확충체계, 경관체계, 종합구상

다. 기본계획

-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라. 관리이용 및 시민참여계획

- 공원녹지관리 및 이용, 시민참여계획

마. 추진 및 투자계획

- 단계별 사업계획, 예산계획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추진경위)

- '20. 10. 13. : 학술용역심의회 의결 (적정)
- '21. 3. 11. : 용역 계약 및 착수
- '22. 3. 31. : 용역(장기1차) 준공
- '23. 1. 30. : 관계부서 의견 조회
- '23. 5. 12. : 자치구 설명회
- '23. 8. 11. : 시민공청회 개최
- '23. 9. 22.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붙임: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요약

I

계획 개요

□ 목적 및 성격

○ 계획의 목적

- 서울시를 공원 속의 도시로 변화시켜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방향 정립
- 기후변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
-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공간배분을 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서울시의 공원녹지축을 완성하여 생태적 기능 향상과 도시민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녹도의 질적 제고 방향 제시

○ 계획의 성격

- 공원녹지에 대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의 기본구상·기본계획·관리 및 이용계획·집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울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
- 물적·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등의 측면을 포괄하여 서울시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보전·관리·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자, 서울시의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

□ 계획의 범위

- 계획면적은 서울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행정구역 면적을 기본으로 하여 605.96km²로 설정
- 계획의 목표년도 2040년으로 하며 1단계 2024년~2030년, 2단계 2031년~2040년으로 구분

II

기본 구상

□ 공원녹지 미래상

녹색우선도시 서울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의 가치를 더하는



□ 조성방향



□ 추진목표

1) 목표 1



▶ 공원유형 다양화

- 기존 생활권 공원 유형 다양화
- 신규 공원 유형의 제도화

▶ 지역과 함께 가는 공원

- 지역수요 대응
- 약자와의 동행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통합관리

- 지정, 이용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 보전과 이용부분으로 관리

▶ 녹색여가 증진

- 공원의 명소화
- 산림자원 활용
-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 정신건강 지원

- 공간조성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 디지털기술 활용

- 디지털 관리대장
- 공원이용 콘텐츠 개발
- 시민참여형 양방향 정보전달

2) 목표 2



▶ 공원녹지 복합화

- 시설복합화
- 입체도시공원 시범사업

▶ 상부공원화

▶ 재개발·재건축과 상생

- 주변과 일체화된 공원녹지 조성
-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 도로다이어트

- 제도적 정비
- 공원기준 마련

▶ 중점녹화지구 활성화

- 면적·선적 대상지 조성
-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정

3) 목표 3



▶ 탄소중립

- 탄소흡수 및 보존 등을 고려한 식재계획
- 녹색건축물화 및 그린리모델링
- 신재생에너지 도입

▶ 방재기능 강화

- 집중호우
- 화재
- 산사태

▶ 미세먼지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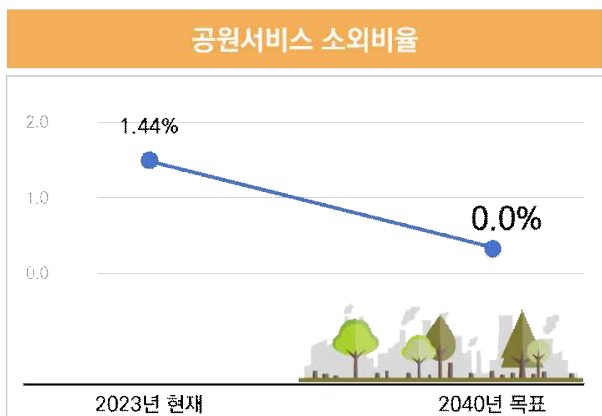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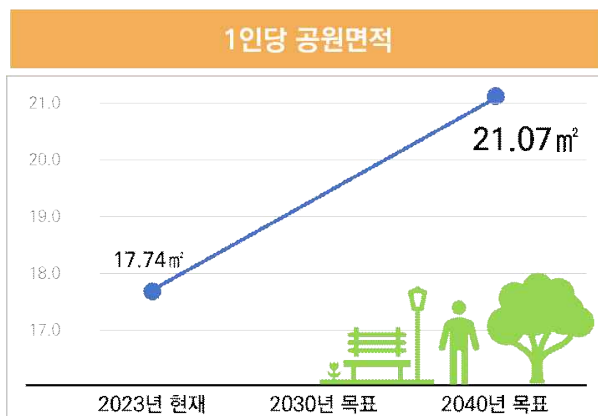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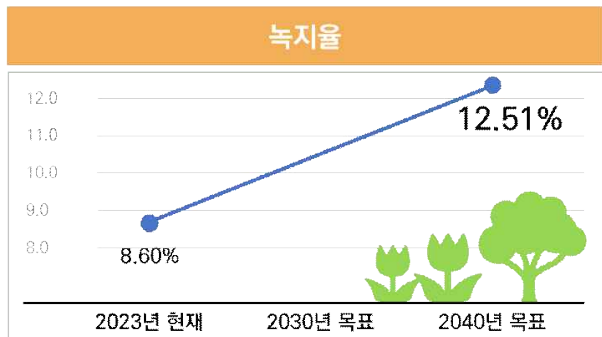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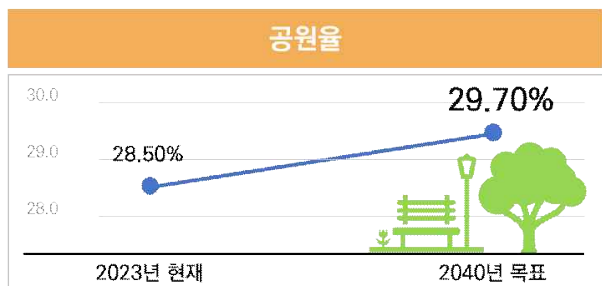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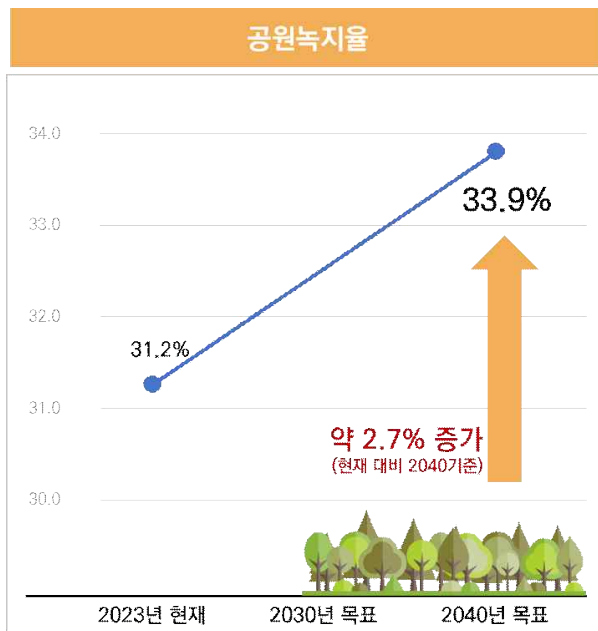
- 바람길 조성
- 그린인프라시설 확충

▶ 생물다양성 증진

- 야생동물과의 공존
- 지속적 보호활동 시스템 구축

□ 공원녹지 계획 지표

지표 항목	현재 (2023년)	목표 (2040년)	증가율
공원녹지율	31.20%	33.90% 이상	+ 2.70%
공원율	28.50%	29.70% 이상	+ 1.20%
녹지율	8.60%	12.51% 이상	+ 3.91%
1인당 공원면적	17.74㎡	21.07㎡ 이상	+ 3.33㎡
공원서비스 소외비율	1.44%	0%	- 1.44%



Ⅲ

단계별 계획 지표

(단위: m²)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계
공원 기본계획	공원 확충계획	신규공원 확충	127,321	65,234	192,555
		도시계획시설 공원화	235,421	329,907	565,328
		이전적지 공원화	238,489	1,834,272	2,072,761
		도시개발사업 시 공원확보	1,925,558	1,262,001	3,187,559
	계		2,526,789	3,491,414	6,018,203
	공원 정비계획	기존공원 재정비	11,086,641	10,069,701	21,156,342
		미집행공원 공원화	1,135,632	137,820	1,273,452
	계		12,222,273	10,207,521	22,429,794
녹지 기본계획	녹지축 연결계획	녹도(초록길)	2,495,182	6,888,231	9,383,413
	계		2,495,182	6,888,231	9,383,413
	녹지 확충계획	옥상공원화	16,000	20,000	36,000
		학교통학로	32,000	40,000	72,000
	계		48,000	60,000	108,000
총계			17,292,244	20,647,166	37,939,410

5.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¹⁾에 따라 시가 수립한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같은 법 제8조제3항²⁾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에서 규정한 법정계획으로 서울시의 통합적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것임.
-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후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40 서울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하 “2040 기본계획안”)은 지난 2015년에 수립³⁾된 ‘2030 서울공원녹지기본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체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립일: 2015년 7월 2일, 변경공고일: 2019년 10월 4일(※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의 공원구역 지정 관련 변경)

<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 >

- 과업착수, 연구진 구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무회의, 현장조사 : '21.3. ~ '21.12.
- 연구진 세미나(1차~10차) 및 실무회의, 세부 연구자문(중점정책) : '22.1. ~ '22.6.
- 시민설문조사, 세부(사업별, 부서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 '22.7. ~ '22.12.
- 실국 검토회의, 시민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 '23.1. ~ '23.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성별영향평가, 최종보고 : '24.1. ~ '24.4.

2)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준

- 국토교통부의 지침⁴⁾에 따르면, 법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보다 더 상세한 수립 기준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근거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수립지침은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한 총칙(제1장)을 비롯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범위(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제4장), 공원녹지 기본구상 수립기준(제5장), 부문별 수립기준(제6장),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수립기준(제7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절차(제8장), 행정 사항(제9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음.

3) '공원녹지기본계획' 개요

- 서울시는 기본계획수립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를 위해 2022년 시민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인식 및 평가', '공원녹지 이용현황 및 만족도 파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시행 2018.11.22.)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명시됨

이번 “2040 기본계획안”에 이 결과를 반영하였음.

- 계획의 면적은 서울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⁵⁾을 대상으로 하였고, 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하며, 1단계 2024년부터 2030년, 2단계 2031년부터 2040년으로 구분하였음.

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지침에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본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일부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구상 및 주요목표

-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의 공원녹지 미래상⁶⁾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성방향, 추진목표, 정책계획,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및 실천 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을 위한 지침계획을 제시하고, 광역권 그린네트워크와 함께 생활권 단위에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공간계획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방향은 크게 ① 여가형태의 다변화 및 건강에 맞춰 정서적 활동을 위한 공원녹지를 제공해 맞춤형 ‘녹색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도시 과밀화 및 공원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라 입체적·통합적 공간을 발굴하는 ‘녹색 채움’, ③ 기후변화 및 안전과 방재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는 ‘녹색 회복’으로 구분하였음.

5) 행정구역 면적을 기본 605.96km²로 설정

6) 공원녹지 미래상: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의 가치를 더하는 녹색우선도시 서울”

-우수한 경관형성, 여가공간 제공, 도심 생태계 복원,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주거환경 개선효과 등

- 추진단계별 지표에 의한 계획은 크게 ‘공원기본계획’과 ‘녹지기본계획’으로 나누었고 ‘공원기본계획’에는 신규로 공원을 확보하는 ‘공원확충계획’⁷⁾과 기존의 공원을 재정비하는 ‘공원정비계획’⁸⁾으로 분류하였으며, ‘녹지기본계획’은 초록길로 그린네트워크를 만드는 ‘녹지축 연결계획’과 옥상공원화, 학교통학로 등 부분 거점을 활용한 ‘녹지확충계획’으로 구분하였음.
- 공원녹지 지표에 의한 계획은 공원녹지율 2.7%p, 공원을 1.2%p, 녹지율 3.91%p를 증가시키고, 공원서비스 소외비율은 1.44%p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시민 1인당 공원면적⁹⁾은 현재 17.74㎡에서 21.07㎡를 추가 확보하여 21.07㎡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24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 지표항목별 목표〉

지표 항목	현재 (2023년)	목표 (2040년)	증가율
공원녹지율	31.20%	33.90% 이상	+ 2.70%
공원을	28.50%	29.70% 이상	+ 1.20%
녹지율	8.60%	12.51% 이상	+ 3.91%
1인당 공원면적	17.74㎡	21.07㎡ 이상	+ 3.33㎡
공원서비스 소외비율	1.44%	0%	- 1.44%

5)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

- ‘2030 기본계획’은 ① 공원녹지를 **양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접근과 ② 그린웨이 등 축을 이용한 **평면적 계획**, ③ 광역권 단위 접근의 녹색복지 불균형 해소, ④ 산사태 사방사업 등 **재난 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음.

반면, ‘2040 계획안’은 ① 공원녹지의 **질적개선**을 위한 ‘공원여가’, ‘약자와의 동행’, 미래(스마트)기술 접목, ② ‘그린네트워크’와 ‘시설복합화’를 고려한 **입체적**

7) 신규공원 확충, 도시계획시설 공원화, 이전적지 공원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 확보

8) 기존공원 재정비, 미집행공원 공원화

9) 1인당 공원면적 계산식: 전체 공원면적/인구수

계획, ③ 생활권 단위 계획을 통한 접근, ④ 기본 방재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내용이 추가되고 있음.

- ‘2040 계획안’은 시민의 생활권에서부터 광역단위 및 권역별로 공원녹지를 연계하는 전략으로써 환경적으로는 공원과 숲을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공원여가 관점에서는 공동체, 가족 등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시민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써 공원녹지가 기능해야할 당위적 목표를 보여주고 있음.

6) ‘공원녹지기본계획’ 주요 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초조사를 토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녹화계획과 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해 관련된 자연공원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¹⁰⁾에 따른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법 제6조제1항¹¹⁾에서 정한 공원녹지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통합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1) 맞춤형 “녹색 이용”

- “공원유형 다양화”를 통해 이용 유형별로 무장애공원, 치유공원, 반려동물 공원, 어르신공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공간 유형별로 입체공원, 가로공원 등으로 다양화 하는 전략으로써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10)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 등

11)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 4. 14.>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개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지역과 함께 가는 공원”은 지역민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인클루시브 디자인¹²⁾을 구축해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하고, 계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의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녹색여가 증진 공원 명소화”는 공원을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조성하지 않고 환경 및 지역의 특색에 맞게 체험, 관광, 문화, 예술, 근린형 등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명소화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산림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휴양림’, ‘캠핑장’, ‘유아숲’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임.

공원명소화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및 제4호 ‘축과 망’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린네트워크로 지점들을 연결함에 있어 권역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맞춤형 녹색 이용 **01**

녹색여가 증진 공원의 명소화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원에 특색을 부여한 공원의 명소화



12) 유니버설 디자인: 남녀노소, 장애·비장애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 신체능력에 따른 다양한 공원이용 선택지 제공
인클루시브 디자인: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계층 참여, 사용자와 최대한 소통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디자인에 참여

- “정신건강 지원”은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치유 정원, 공동텃밭, 원예, 전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건강도시’ 측면에서 공원녹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며, “디지털 기술 활용”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관리대장을 디지털화 하고 기록하여 공원관리 현황과 이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임.

(2) 도시의 작은 틈에도 “녹색 채움”

- “공원녹지 복합화”는 고가하부, 지하도, 유수지 등의 유허공간을 활용하여 시설과 공원녹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으로 도심 내 공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지만, 공원이 아닌 곳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복합화된 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입체도시공원 제도” 도입은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인공지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의 편의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상부 공원화’ 역시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토지복합 활용 측면에서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중점녹화지구 활성화”는 도시공간에서 녹지의 보존과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이를 선적으로 그린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훼손된 공간은 복원, 휴게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으로써 ‘선’과 ‘면’의 녹화방식을 병행하여 권역 별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인근의 녹색거점들을 연계하는 계획임.

(3)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

-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탄소상쇄숲을 조성하고 그에 알맞는 식재를 통해 공원녹지를 확보함으로써 2040년까지 현재 대비 약 8.8% 증가하는 탄소흡수량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임.



- “방재기능 강화”는 ‘집중호우’, ‘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빗물투수, 물순환 저류시설, 산사태 대응 녹지대 등을 조성하는 전략으로 시설정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유사 시 시민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미세먼지 저감”은 바람길을 조성하고 그린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시 내 공기질을 정화하려는 계획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이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설정과 구체적인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임.
-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양한 동식물의 좋은 생육환경이 시민의 육체·정신 건강에도 유리한 것으로 검증된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통로 조성, 무성한 수풀조성, 안전펜스 정비 등의 계획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동물원을 제외하면 동물을 볼 수 없는 환경이므로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임.

7) 시민공청회(주민의견청취) 결과

-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으로는 ‘질적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신규지표 도입, 공원녹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구체적 제안, 지역간 공원서비스 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고령층 인구에 대응하는 전략, 산림자원 활용 및 탄소 중립 전략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공원이용시설 가이드 라인 안내,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였음.

시민참여와 관련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 계획 마련, 공원운영관리에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조직)의 참여를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둘레길’, ‘도시숲지원센터’, ‘거점형 공원센터’ 등 대시민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방청자 의견으로는 철도변(경의선)을 지하화하여 상부를 공원으로 개발할 것, 공원 내 시설 개축증설을 지양하고 개방감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공원 내 배수로 등 방재기능을 향상시켜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음.

8)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사항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서울시는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생활권 단위에서부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인 만큼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 자료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만큼 본보고서는 지침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임.
-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공원조성 과정 및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므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녹시생태도심 재창조 전략’¹³⁾ 등에 공원녹지 계획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국간 세부전략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 조성이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도시·건축에서 조성하는 개방형 녹지공간, 입체공원 등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공원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의 지위에 준하는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함께 필요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30년 국공유지 소멸시효 대비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유지 소유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산림휴양(산지형공원구역) 사업 측면에서

13) 대규모 민간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 (30% 이상)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지사용계약 또는 별도의 장기계약을 통한 협력(협약)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 밖에 공원시설 이용에 대해 황톳길, 동물놀이터 등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수요를 정보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공원의 유형과 프로그램 계획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스마트도시’ 전략으로써 지역민이 원하는 수요에 대해 맞춤형 공원 녹지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종합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공청회와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푸른도시여가국과 전문가 집단이 다회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계획안을 구체화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침에서 정한 사항들이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일부 전문가 의견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적 특성과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임.

- 한편,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시사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출된 ‘2040 기본계획안’에는 이 부분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국내외 참고사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 동의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451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현황, 현황분석

나. 기본구상

목표 및 지표, 기본방향, 보전체계, 확충체계, 경관체계, 종합구상

다. 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라. 관리이용 및 시민참여계획

공원녹지관리 및 이용, 시민참여계획

마. 추진 및 투자계획

단계별 사업계획, 예산계획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추진경위)

- '20. 10. 13. : 학술용역심의회 의결 (적정)
- '21. 3. 11. : 용역 계약 및 착수
- '22. 3. 31. : 용역(장기1차) 준공
- '23. 1. 30. : 관계부서 의견 조회
- '23. 5. 12. : 자치구 설명회
- '23. 8. 11. : 시민공청회 개최
- '23. 9. 22.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붙임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요약

※ 작성자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이준근 (☎2133 - 2034)

I

계획 개요

□ 목적 및 성격

○ 계획의 목적

- 서울시를 공원 속의 도시로 변화시켜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방향 정립
- 기후변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
-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공간배분을 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서울시의 공원녹지축을 완성하여 생태적 기능 향상과 도시민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녹도의 질적 제고 방향 제시

○ 계획의 성격

- 공원녹지에 대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의 기본구상·기본계획·관리 및 이용계획·집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울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
- 물적·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등의 측면을 포괄하여 서울시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보전·관리·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자, 서울시의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

□ 계획의 범위

- 계획면적은 서울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행정구역 면적을 기본으로 하여 605.96km²로 설정
- 계획의 목표년도 2040년으로 하며 1단계 2024년~2030년, 2단계 2031년~2040년으로 구분

II

기본 구상

□ 공원녹지 미래상

녹색우선도시 서울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의 가치를 더하는



□ 조성방향



□ 추진목표

1) 목표 1



▶ 공원유형 다양화

- 기존 생활권 공원 유형 다양화
- 신규 공원 유형의 제도화

▶ 지역과 함께 가는 공원

- 지역수요 대응
- 약자와의 동행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통합관리

- 지정, 이용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 보전과 이용부분으로 관리

▶ 녹색여가 증진

- 공원의 명소화
- 산림자원 활용
-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 정신건강 지원

- 공간조성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 디지털기술 활용

- 디지털 관리대장
- 공원이용 콘텐츠 개발
- 시민참여형 양방향 정보전달

2) 목표 2



▶ 공원녹지 복합화

- 시설복합화
- 입체도시공원 시범사업

▶ 상부공원화

▶ 재개발·재건축과 상생

- 주변과 일체화된 공원녹지 조성
-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 도로다이어트

- 제도적 정비
- 공원기준 마련

▶ 중점녹화지구 활성화

- 면적·선적 대상지 조성
-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정

3) 목표 3



▶ 탄소중립

- 탄소흡수 및 보존 등을 고려한 식재계획
- 녹색건축물화 및 그린리모델링
- 신재생에너지 도입

▶ 방재기능 강화

- 집중호우
- 화재
- 산사태

▶ 미세먼지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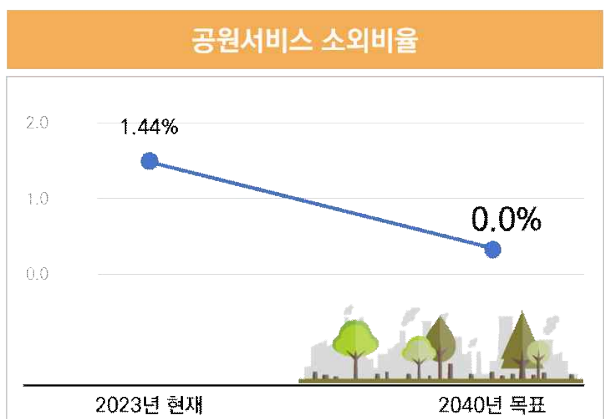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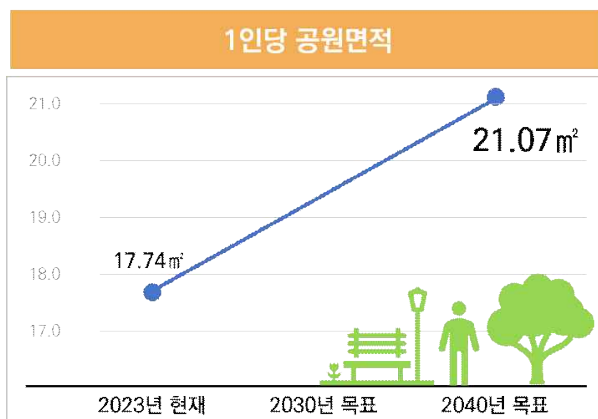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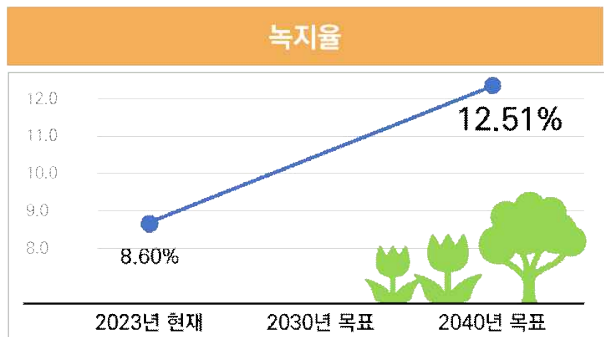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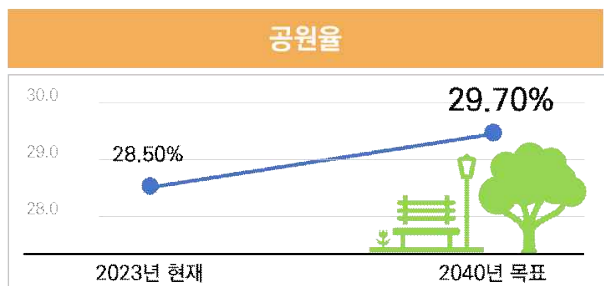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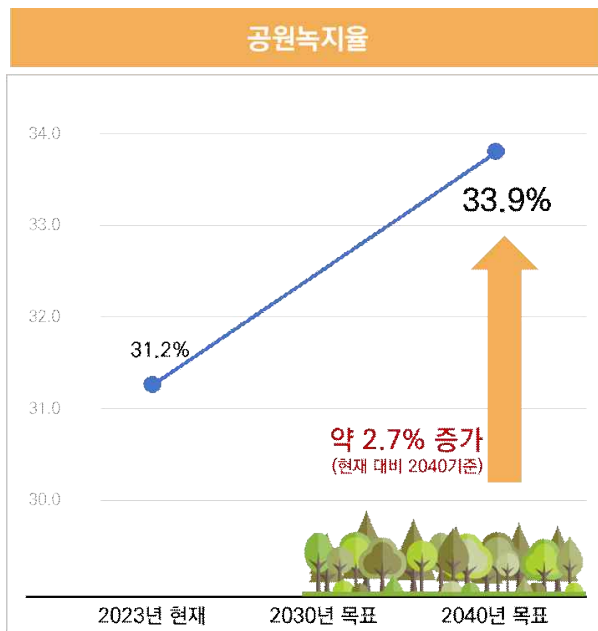
- 바람길 조성
- 그린인프라시설 확충

▶ 생물다양성 증진

- 야생동물과의 공존
- 지속적 보호활동 시스템 구축

□ 공원녹지 계획 지표

지표 항목	현재 (2023년)	목표 (2040년)	증가율
공원녹지율	31.20%	33.90% 이상	+ 2.70%
공원율	28.50%	29.70% 이상	+ 1.20%
녹지율	8.60%	12.51% 이상	+ 3.91%
1인당 공원면적	17.74㎡	21.07㎡ 이상	+ 3.33㎡
공원서비스 소외비율	1.44%	0%	- 1.44%



Ⅲ

단계별 계획 지표

(단위: m²)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계
공원 기본계획	공원 확충계획	신규공원 확충	127,321	65,234	192,555
		도시계획시설 공원화	235,421	329,907	565,328
		이전적지 공원화	238,489	1,834,272	2,072,761
		도시개발사업 시 공원확보	1,925,558	1,262,001	3,187,559
	계		2,526,789	3,491,414	6,018,203
	공원 정비계획	기존공원 재정비	11,086,641	10,069,701	21,156,342
		미집행공원 공원화	1,135,632	137,820	1,273,452
	계		12,222,273	10,207,521	22,429,794
	녹지 기본계획	녹지축 연결계획	녹도(초록길)	2,495,182	6,888,231
계		2,495,182	6,888,231	9,383,413	
녹지 확충계획		옥상공원화	16,000	20,000	36,000
		학교통학로	32,000	40,000	72,000
계		48,000	60,000	108,000	
총계			17,292,244	20,647,166	37,939,410